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775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변론 종결 2019. 3. 13.

판결 선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56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2003. 2. 22. 접수 제8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2003. 2. 22.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C 소유의 아산시 D 답 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3. 2.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2. 22. 접수 제845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00. 11. 27., 2001. 4. 28., 2001. 9. 7. C과 사이에, C이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C이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E조합에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차전297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 3) 위 법원은 2012. 7. 26. 'C은 원고에게 117,598,790원 및 그 중 52,454,605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6.경 C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4. 3. 7.,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3. 2. 22. 그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2. 2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은 일반채권의 최장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3. 3. 22.부터 10년이 도과 한 2013. 3. 23.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되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C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의 대위

C이 무자력 상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등참조).

따라서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수시로 피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오면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은 2019. 2. 13.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C의 시효이익 포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2. 13. 피고에게 2019. 12.말까지 차용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인 2019. 2. 13. 작성된 C의 각서(을 제5호증)를 제2회 변론기일인 2019. 2. 20. 제출한 점, ② C의 각서(을 제5호증)에 "위 차용금에 대하여 지급기로 한 원금은 차치하고 이자만 매년 수회에 걸쳐 돈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여 오다가 금번과 같이 귀하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에게 변제확약의사를 담은 각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자신의 채권이 원고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은 원고에 의하여 자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되고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C의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권리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C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민영